가계동향조사 지침서

2020

illji 통계청



차 례

가계동향조사지침서

I .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3
2. 법적근거	• 3
3. 조사연혁	. 3
4. 조사기간	. 5
5. 조사주기	. 5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 5
7. 조사대상	11
8. 조사항목	11
9. 조사방법	12
10. 결과공표	12
11. 조사체계	12
Ⅱ. 가계부 작성방법	
五. / /	
1. 가계부 구성 및 표지란	14
2. 가계부 실태 작성방법	16
3. 가계부 수지 작성방법	30
Ⅲ 日早	
Ⅲ. 부록	
1. 관련용어 해설	34
2. 통계법(발췌)	38
3. 가계동향조사가 언급된 법령	41



가계동향조사지침서
Part

조 사 개 요

Part I

조 사 개 요

01 조사목적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 ㅇ 소비자 물가지수 작성에 필요한 가중치 기초자료 제공
- 소득수준 측정 및 소득동향 파악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 국민소득 추계 등 경제·사회통계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ㅇ 주거이전비 산정, 취약계층 지원사업, 근로자 임금기준의 결정 등의 기준 제공

0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101006호

03 조사연혁

- 1942년 일제말기 처음 시작
- 1951년 한국은행에서 부산 60가구 대상 조사
- 1954년 서울 근로자 200가구 유의표본 조사
- 1960년 임의표본으로 전면개편 조사
- 1963년 통계청으로 이관하여 5대비목별 품목분류방식(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잡비)에 의한 30개 도시를 대상(조사가구 1,700개)으로 조사
- 1969년 다목적표본 설계(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인구동태표본조사에도 사용)를 적용하여 조사(대상 조사가구 1,800개)

- 1972년 다목적표본 1차개편
- 1975년 전 비목에 대한 가계부 기장방식을 채택(이전에는 식료품비만 가계부 기장방식이며 나머지 비목은 분기별로 면접조사)
- 1977년 다목적표본 2차개편(조사가구 4,000개로 확대)
- 1982년 가계소비지출을 5대비목에서 9대비목(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 피복, 보건, 교육교양오락, 교통, 기타)으로 개편
- 1983년 다목적표본 3차개편(조사가구 4,400개)
- 1988년 다목적표본 4차개편, 전국 62개 도시(조사가구 4,500개)를 대상
- 1993년 다목적표본 5차개편(조사가구 5,500개)
- 1995년 가계소비지출을 9대비목에서 10대비목(교육·교양오락비를 교육과 교양오락비로 분리)으로 확대
- 1998년 다목적표본 6차개편(조사가구 5,500개)
- 2003년 다목적표본 7차개편(조사가구 7,500개)
 - 도시가계조사에서 전국가계조사로 확대
- 2005년 다목적연동표본방식 도입
- 2006년 1인가구 조사, 전자가계부 도입
- 2007년 다목적연동표본 8차개편
- 2009년 소비지출의 항목분류를 국제기준인 COICOP분류 체계로 개편
- 2014년 일부 항목분류 통합(426개 분류)
- 2017년 지출부문과 소득부문으로 이원화하여 조사 실시
 - (지출부문) 전용표본 12,000가구, 농림어가 포함, 연간통계
 - (소득부문) 기존 다목적표본(5,500가구), 분기통계
- 2018년 (소득부문) 기존 다목적표본 규모 확대(8,000가구)
- 2019년 가계동향조사 소득·지출 통합(전용표본 월 7,200가구), 농림어가포함
 - 이원화된 분기 소득부문과 연간 지출부문 조사를 단일한 6-6-6 연동표본체계로 통합하여 조사실시
 - (소득부문) 1년간 한시적으로 병행실시

04 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 매월 1일 ~ 말일

○ 조사실시기간 : 매월

05 조사주기

ㅇ 매월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

06 모집단 및 표본설계

가. 모집단

-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 :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일반 가구
-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 : 조사가 어렵거나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기 적합하지 않은 아래와 같은 지역(가구)을 제외한 일반가구
 - 조사가 매우 어려운 섬조사구와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지 못한 기숙사 등 집단가구 제외
 - 또한, 가구의 지출과 영업을 위한 경비지출 구분이 곤란한 음식점, 여관, 하숙 겸업가구는 제외

ㅇ 표본추출틀

-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보통조사구(1), 섬조사구(2) 및 아파트조사구(A)를 표본추출명부(sampling frame)로 하여, 추출단위 조사구별로 모집단 특성에 대해 기초자료 집계
- * 접근이 어려운 섬 조사구 제외
- * 모집단에 대한 포함률(coverage)은 99.8%임
- 표본의 대표성(sample representativeness)은 가중 후 전국의 모든 가구를 대표

나. 층화 및 분류지표

- 8대 도시(특별시와 광역시)와 9개 도(道)로 우선 층화하고, 각 도에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다시 구분하여 전국을 27개 지역으로 층화
 - 공표수준(전국, 동부)과 이전 조사와의 시계열 연계 등을 고려하여 가계소득 조사와 동일한 설계층 적용
 - 27개 설계층별 가계지출조사 표본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가계지출조사 분석 결과)
- 분류지표 선정 및 활용
 - 2018년 상반기 가계지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소득 금액과 연관성이 높은 분류지표 선정
 - 층화 후 조사항목과 연관성이 높은 조사구 특성 변수(분류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하고 계통추출하면 내재적 층화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권역(조사구역), 소득(추정), 주택유형(9개 분류) 및 가구구성 등으로 선정

다. 표본체계

- ㅇ 가계소득 및 지출구조 파악에 특화된 전용표본 추출
- 분기통계 작성, 전년비 및 전기비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표본체계* 필요
 - * 소득지출통계 통합 관련 외부전문가 회의('18.4,7,8)
 - 응답자의 응답부담, 표본체계에 따른 비표본오차*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6-6 연동표본체계 적용 결정
 - * 재조사에 따른 효과(불응 증가, 표본가구 변동 등) 등 표본체계로 인한 오차
- 6-6-6 연동표본체계
 -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가 6개월 간 연속으로 조사에 참여 한 후, 6개월 간의 휴식기간을 두고 다시 6개월 동안 조사에 참여
 - 단, 표본체계 적용 시점에서의 조사 안정화를 위하여 조사 시작월('19.1.)로부터 6 개월 간 연동교체 미적용

라. 표본규모

- ㅇ 표본조사구 규모
 - 소득통계의 분기 공표를 고려하여 연동그룹별 최소표본규모 검토
 - 모의실험 결과, 연동그룹별 최소표본규모는 150조사구 수준인 것으로 판단
- 표본 배분을 위한 검토
 - 모집단의 가구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배분 및 제곱근 비례배분방법 검토
 - 연동모형을 고려하여 패널별 표본규모를 6의 배수로 조정
- ㅇ 상대표준오차 검토
 - 「소득」의 연간 상대표준오차(RSE)는 전국 2.5%, 「가계지출」은 1.5% 내외로 예상
- ㅇ 표본규모 산정
 - 전국 표본규모의 총합은 900조사구(1,800구역)이며, 월 조사대상가구는 7,200 가구임

마. 표본 추출

- ㅇ 표본추출 방법
 - 층화 2단 집락추출
- ㅇ 표본조사구
 - 27개 설계층 및 소득 관련 분류지표를 기준으로 패널별 표본조사구 추출
 - 추출된 표본조사구(패널 표본)를 대상으로 상호 동질성을 가지도록 6개 그룹으로 분할
- ㅇ 표본가구
 - 조사구별 무작위로 선정한 시작가구로부터 연속된 16가구(동부) 및 12가구 (읍면부)를 조사구역*으로 설정(가구명부에 시작가구 번호 제공)
 - * 명부 순서에 따른 4가구를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

바. 가중값 및 추정

○ (설계가중값) 과대추출방법 적용에 따라 표본조사구 내 표본가구수가 서로 상이하므로 설계가중값 적용 필요

- 조사구 추출 : 설계층별 확률비례계통추출(조사구의 가구수 비례)

- 가구 추출 : 조사구 내에서 8가구 추출

설계 가중값
$$w_{hij}^b=rac{M_h}{n_h\,M_{hi}} imesrac{M_{hi}}{m_{hi}}=rac{M_h}{n_h imes m_{hi}}$$
 $=rac{M_h}{n_h imes m_{hi}}$

 $\cdot \; w_{hij}^{\;b} \; : h$ 층 i조사구 j가구의 설계가중값

 \cdot M_h : h층의 인총 전수조사구의 가구수

 \cdot M_{hi} : h층 i조사구의 전체 가구수(크기척도)

 $\cdot n_h$: h층의 연간(분기) 표본 조사구수

 m_{hi} : i조사구 내 표본 가구수 $(m_{hi}=8)$

. $h=1,2,\cdots,27$: 설계층(지역), $i=1,2,\cdots,n_h$: 조사구, $j=1,2,\cdots,8$: 가구

○ (무응답가중값) 불응 등의 가구 무응답으로 인한 표본 손실을 보정하기 위하여 무응답가중값 보정

- 표본가구의 응답률과 관련이 있는 거처유형, 가구원수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무응답층 구성 또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무응답 보정

무응답 가중값 $w_{hij} = w_{hij}^b imes w_{hij}^r$

 \cdot $w_{hij}^{\;b}$: h층 i조사구 j가구의 설계가중값

 w_{hii}^{r} : h층 i조사구 j가구의 무응답 보정계수

- (사후가중값) 설계 당시에 고려하지 못한 모집단의 분포를 보정하고 최신의 모집단 규모를 반영하기 위해 가구 특성 분포를 활용한 반복비례가중법 이용
 - 지역층, 주택유형,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대로 사후층 구성
 - 반복비례가중법의 적용을 위한 제약식

$$N_{+\;jk} = \sum_{i\,=\,1}^{136} \hat{N}_{ijk} \,, \; N_{i+\;k} = \sum_{j\,=\,1}^{68} \hat{N}_{ijk} \,, \; N_{ij\,+} = \sum_{k\,=\,1}^{16} \hat{N}_{ijk}$$

여기서 i: 지역층imes주택유형imes가구원수, j: 지역층imes가구주 연령대, k: 가구원수imes가구주 연령대

• 수렴 조건

$$|\sum \hat{N}_{ijk} - N| \times 100 < 0.001(\%)$$

ㅇ 추정

- 비율(평균) 추정 : H-T(Horvitz-Thompson) 추정량

비율(평균)
$$\hat{\mu} = \hat{p} = \overline{y} = \frac{\displaystyle\sum_{h}^{H} \sum_{i}^{n_{h}} \sum_{j}^{m_{hi}} w_{hij} \ y_{hij}}{\displaystyle\sum_{h}^{H} \sum_{i}^{n_{h}} \sum_{j}^{m_{hi}} w_{hij}}$$

 $egin{array}{ll} \cdot w_{hij} & : h \- omega i \end{array} is ship i \sum_j r$ 구의 사후가중값 $\cdot y_{hij} & : h \- omega i \longrightarrow j$ 가구의 관측값

. $h=1,2,\cdots,27$: 설계층(지역), $i=1,2,\cdots,n_h$: 조사구, $j=1,2,\cdots,8$: 가구

- 분산 추정 : 테일러선형 방법(Taylor Series Method)

$$\widehat{Var}(\widehat{\overline{Y}}) = \frac{\sum_{h=1}^{H} \frac{n_h (1 - f_h)}{n_h - 1} \sum_{i=1}^{n_h} [W_{hi}(\overline{y_{hi}} - \overline{y}_h) - \frac{1}{n_h} \sum_{s=1}^{n_h} W_{hs}(\overline{y_{hs}} - \overline{y}_h)]^2}{(\sum_{h=1}^{H} \sum_{i=1}^{n_h} W_{hi})^2}$$

$$\qquad e_{hi} = \left(\sum_{j=1}^{m_{hi}} w_{hij} \left(y_{hij} - \overline{y} \right) \right) / w ...$$

$$\cdot \quad w... = \sum_{h}^{H} \sum_{i}^{n_{h}} \sum_{j}^{m_{hi}} w_{hij}$$

- 표준오차(SE) 및 상태표준오차(RSE)

$$\widehat{SE}(\overline{y}) = \sqrt{\widehat{Var}(\overline{y})}$$

$$\widehat{RSE}(\overline{y}) = \frac{\widehat{SE}(\overline{y})}{\overline{y}} \times 100(\%)$$

07 조사대상

- 가. 조사대상 가구
 -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가구
- 나. 조사대상 제외가구
 - 집단가구, 음식숙박겸용주택가구, 장기출타가구, 비혈연가구, 외국인가구, 지 출의존가구

08 조사항목

가. 가구실태

- 가구원에 관한 사항 :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정도, 취업여부,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 ㅇ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 ㅇ 무직가구의 주된 수입워
- 거처구분, 자동차보유여부, 주거에 관한 사항

나. 조사표

- ㅇ 이번달 변동사항 : 이번달 내구재 구입항목 및 가구변동사항 기입
- 자동이체항목 : 매월 반복되는 수입지출 항목을 기입
- 수입과 지출 : 조사대상가구에서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내용을 기입
- 기타 : 가구와 통신할 수 있는 글 기입

09 조사방법

- 가구실태 관련항목 : 조사담당자 면접방식
- 가구의 수입 및 지출 관련항목 : 응답자 기입방식(종이 및 전자가계부)
 - 종이가계부 : 조사대상가구가 종이가계부에 수입과 지출항목을 자기기입식 으로 기입한 후, 조사직원이 내용검토 후 입력
 - 전자가계부 : 조사대상가구가 인터넷에 연결된 전자가계부(e-diary)로 직접 접속하여 입력

10 결과공표

- 통계표 : 전국 및 도시가구의 소득 및 지출
- 보도자료 및 KOSIS 공표
 - (분기) 소득 및 지출 : 2020년 5월, 8월, 11월 및 2021년 2월
 - (연간) 지출 : 2021년 4월(예정)
-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공표일 이후 한달 이내

11 조사체계

표본가구 → 조사담당자 → 지방청(사무소) →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



Part 02

가계부 작성방법

- 1. 가계부 구성 및 표지란
- 2. 가계부 실태 작성방법
- 3. 가계부 수지 작성방법

Part IV

가계부 작성방법

- 01 가계부 구성 및 표지란
- 01-1 표지란

_____년 ___월

조사구번호	구역 및 거처	가구번호
-		

	지방청(사무소)
조사담당자	
핸드폰(전화)	

조사년월

ㅇ 조사대상 해당 연도와 월을 기입

조사구번호 ○ 표본과에서 지정한 해당 조사구의 번호를 기입

구역 및 거처번호 ㅇ 해당 조사구의 가구명부를 보고 지정된 구역 및 거처번호를 기입

가구번호

ㅇ 해당 조사구의 가구명부를 보고 조사대상가구의 고유번호를 기입

조사담당자 ○ 지방청 또는 사무소명과 조사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입

01-2 이번 달 변동사항

이번 달 가구에서 구입(지출)한 주요품목은?

분 류	항 목 명			
핸 드 폰	스마트폰□(대) 일반폰□(대)			
운송수단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주택수리	보일러교체□ 도배장판□ 싱크대교체□ 욕실공사□ 창틀교체□			
가 구	옷장□ 침대□ 장식장□ 소파□ 책상□ 식탁□			
가전제품	TV□ PC□ 카메라□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기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기 타	피아노□ 기타 악기□ 골프용품□ 핸드백·가방□ 기타 □			
여 행	국내여행□ 해외여행□ <mark>의 료</mark> 병·의원□ 치과□			
가 구 내 경 조 사	혼례□ 출산□ 장례□ 부 동 산 매입□ 매도□			

※ 10만원 이상 주요 품목에 한함

주) PC에는 노트북, 태블릿PC 등 포함

주요품목 구입

○ 조사담당자가 주요품목의 구입여부 및 관련 지출내역이 가계부에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

이번 달 우리집의 변화는?

- 1. 이번 달에 가구원 변동이 있다. □
- 2. 이번 달에 임차방법 또는 임대료에 변동이 있다. □

<임차방법 변동 사례 >

- 전세에서 보증금 월세, 월세 또는 거주주택 구입으로 변동
- 보증금 월세 또는 월세에서 전세 또는 거주주택 구입으로 변동
- 거주주택을 매매하고 전세 또는 월세로 변동

임대차변동

- **가구원 및** 변동있는 가구원의 수입 및 지출이 누락되었거나 포함되었는지 확인
 - 주거형태(자가/임차) 또는 임대료 등의 변동 및 관련 지출내역을 확인

02 가계부 실태 작성방법

가. 가구원 사항

● 가구원 인적사항

	(1) 가구 ² 관	은 우 기	(2)성별	(3)주민등록기준 생년월일	(4) 교	l육정도
	성명				학력	수학역부
1						
2						
3						
4						
(5)						
6						

○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포함

(4) 교육정도

학 력

< 학력 부호표 >

부호	분 류	부호	분 류
1	안받음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교(3년제 이하)	6	대학교(4년제 이상)
7	대학원(석사)	8	대학원(박사)

- 학력 란은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재학이나 휴학 중인 사람에게 해당
 - 입시학원, 기술학원, 노인대학, 시민대학 등은 정규학교과정에서 제외
 - 유치원은 안받음으로 기입
 - 공민학교는 초등학교과정,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로 처리
 - 대학교(3년제 이하)는 초급대학, 전문대학, 대학 2년제, 국제전문학교 2년제, 간호대 3년제 등을 말함
 - 대학원의 경우 석사와 박사 과정을 구별

수학여부

<수학여부 분류표>

부 호	1	2	3	4	5
분 류	졸업	재학	수료	중퇴	휴학

- 학력이 '①안 받음(미취학 포함)'인 경우 수학여부 미기입
- 수학여부별로 해당부분에 각각 기입
- 2월 중학교 졸업한 학생
 - 고등학교 진학여부와 관계없이 2월에는 중학교 졸업으로 기입하나, 3월에는 진학여부에 따라 분류
 - 미리 납부하는 등록금은 상급학교 납입금, 교과서 구입비 등은 고등학생의 지출로 처리
- ㅇ 재수생
 - 고등학교 재수생은 ⇒ 중학교 졸업 (학력 2 수학여부 1)
 - 대학교 재수생은 ⇒ 고등학교 졸업 (학력 3 수학여부 1)
- ㅇ 검정고시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 초등학교 졸업 (학력 1 수학여부 1)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 중학교 졸업 (학력 2 수학여부 1)
 - 대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 ⇒ 고등학교 졸업 (학력 3 수학여부 1)

● 가구원 경제활동관련 사항

(5)		(6) 산	업	(7) 직 업			(8)
취업여부	코드	사업체명	주된 활동	코드	일의 종류	직명(직위)	종사상지위

(5) 취업여부

취업자

ㅇ 만 15세 이상 가구원만 응답

개 념

- 취업자(1번) : 취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 비취업자(2번)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제외자
- ※ 기본 개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음. 단, **직업군인의 경우** 경제 활동조사에서는 대상외로 분류되지만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취업자**로 분류하므로 주의

취 업

- ① 일한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식사, 주거, 또는 곡물제공)을 급료로 받는 경우
- ② 자기 자신의 사업장에서 이윤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우 또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경우
- ③ 소득의 적자유무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는 못하였으나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시간을 보낸 경우
- ④ 휴가나 유급휴직의 경우
- ⑤ 무급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⑥ 무급가족종사자는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경우

비취업

- ①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예: 도박, 매춘 등)
- ②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 ③ 경마,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6) 산 업

- 산업이란 가구원이 근무하는 사업체의 주된 활동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항목
 - 근무처에서 하는 주된 일(직업)과는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조사대상 기간 중 산업이 바뀌면 당해 월의 근무시간이 긴 산업을 기입
 - 가구주가 바뀐 경우에도 새로운 가구주의 산업에 따라 구분
- 사업체명과 사업체의 주된 활동을 기입하고 산업분류 코드표에서 해당되는 부호를 찾아 표시

사업체명

- 사업체명 : 가구원이 다니는 회사나 기관의 이름을 기입
 - 근로자일 때
 - ·다니고 있는 직장명을 최하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
 - 자영자일 때
 - •경영하는 사업체나 점포의 이름을 기입
 - ·만일 사업체명이나 점포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사업』또는 『가족사업』이라고 기업
 - 여러 곳에서 일하거나, 매일 다른 곳에서 일할 때

조사대상기간에 파출부와 같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와 잡역부와 같이 매일 다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한 곳의 특징을 기입

예) 파출부 : 남의 가정에서, 건설잡역 : 건물 공사장

사업체의 주된 활동

- ㅇ 사업체의 주된 활동
 - 사업체내에서 조사대상자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체의 종합적** 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명시

- ㅇ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우
 - ① 사업체의 각 활동들이 별도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 응답자가 속한 사업장의 수행활동을 기입
- ②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주된 산업 활동을 기준으로 기입
- ㅇ 가내공업의 경우 : 자기사업을 자기 집에서 수행하는 가내수공업의 경우라도 사업체로 간주하여 산업활동을 조사

<산업분류 코드표>

(제10차 개정)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등 G. 도소매업

E. 하수, 폐기물, 환경

F. 건설업

H. 운수, 창고업

I. 숙박, 음식점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기술

 J. 출판, 영상, 정보 등
 K. 금융, 보험업

 M. 전문, 과학, 기술
 N. 사업시설, 사업지원, 임대

O. 행정, 국방 등

P. 교육서비스

Q. 보건, 복지

R. 예술, 스포츠 등

S. 협회, 수리, 개인 T. 가구내 고용활동, 자가소비생산활동

U. 국제, 외국

Z. 무직

(7) 직 업

- ㅇ 가구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체에서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으며 직위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
- 일의 종류와 직명(직위)을 기입하고 직업분류코드표에서 해당되는 부호를 찾아 표시
- ㅇ 조사대상기간 중 직업이 바뀌면 근무시간이 긴 직업을 기입
 - 가구주가 바뀐 경우에도 새로운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구분
- ㅇ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
 - ① 업무수행 시간이 많은 일
 - ② 소득이 많은 일의 순으로 주된 일을 기입

<직업분류 코드표>

(제7차 개정)

- 1. 관리자
- 3. 사무 종사자
- 5. 판매 종사자
-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 9. 단순노무종사자
- A. 군인

-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4. 서비스 종사자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 Z. 무직

일의 종류 - 가구원이 소속된 사업체에서 어떠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느냐를 구체적으로 기입

예) 여성의류 판매, 웹 디자인, 경리사무, 치아치료 등

- 직명(직위) 근무처에서의 직명이나 직위를 자세한 형태로 기입 예) 판매원, 웹 디자이너, 경리계장(6급), 치과의사 등
 - ㅇ 직위는 업무수행상 책임의 정도 및 수행할 임무의 특수성에 따른 구분으로 가구주의 직업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하여 파악

(8) 종사상지위

판단기준

- ㅇ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주, 단독자영업자 등과 같이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
- ㅇ 종사상지위 분류표를 보고 해당하는 종사상의 지위 기입
- 고용형태는 다양하므로 ① 고용이 자기고용인지 고용을 창출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 근로자와 근로자외를 구분 ② 고용계약기간에 따라서 분류
- 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이면 상용근로자, 1개월이상~1년미만이면 임시근로자, 1개월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 분류

- 고용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도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1년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1년이상은 상용근로자, 1년미만은 임시근로자로 분류
- 동일업체에 1년이상 근무한 경우라도 고용계약이 처음부터 임시 또는 일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우선하여 임시 또는 일용으로 분류

< 종사상지위 분류> - 상용근로자(1) - 임금근로자* - 임시근로자(2) - 일용근로자(3) - 고용주(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자영업자** - 단독자영업자(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6) - 기타(7)

나.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Ⅱ.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						
	취 업	학 업	기 타 (보육 등)			
배우자	[]	[]	[]			
자 녀	Ę	ਸ਼ ਸ਼	명			

○ 학업이나 취업, 요양, 기타의 사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구주의 배우자와 미혼자녀를 조사

학업

- 타 지역이나 외국에서 학업으로 인해 하숙, 자취하거나 기숙사에 있으며 조사대상가구의 부담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직계 가족이 있을 경우
- 단, 직장에서 경비를 대주며 외국에 파견하여 공부 및 연구하게 하거나 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취업』에 해당

취업

○ 타 지역에서 회사나 관공서 등에 근무하거나 사업 등을 하여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직계가족

기타

- 조사대상 1인가구가 취업 및 학업 등으로 혼자 떨어져 사는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는 모두 '기타'에 분류
- 학업이나 취업 이외의 사유로 따로 살고 있는 배우자나 미혼자녀
 - 요양원, 기도원 등에서 장기간 요양 중인 가족의 경우
 - 군대나 전투경찰대에 입대한 가족이 있을 경우
 -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된 경우 등

다. 무직가구의 주된 수입원

Ⅲ. 무직가구의 주된 수입원					
1. 연금	2. 공적수혜금				
3. 사적보조	4. 임대수입				
5. 이자 및 배당금	6. 저금찾음				
7. 빌린 돈	8. 기타				

- ㅇ 가구주가 무직인 가구만 조사
 - 무직가구의 생활비는 주로 어떤 소득에 의하여 충당되는지를 파악 하는 항목

연 금

- 공적연금: 국민연금 또는 이를 대신하는 특정직업군에 속했던 사람이
 매월 일정액을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금액
- 개인연금 : 금융기관에서 사용자가 불입한 금액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퇴직연금 :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피용자가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퇴직 시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 적 수 혜 금

 연금을 제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이전소득으로 생활하며 기여금 또는 부담금의 적립 없이 연령, 소득, 부, 메달획득 및 유공인정 등 특정조건을 만족한 경우 지불받는 수혜금

사적보조

민간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며, 친척이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보조받은 송금 및 생활보조금도 포함

임대수입

○ 건물, 토지, 기계장비, 자격증 등에 대한 임대료 등

이자 및 배 당 금

ㅇ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나 주식배당금 등으로 생활하는 경우

저 금 찾음

○ 저축해 두었던 돈을 찾아서 생활하는 가구

빌리 돈

ㅇ 다른 가구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부채증가)으로 생활하는 경우

기 타

│○ 상기 이외의 비경상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것이 해당

라. 거처구분

Ⅳ. 거 처 구 분

-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 2. 아 파 트
- 3. 연립주택
- 4. 다세대주택
- 5. 비거주용건물
- 6. 오피스텔 7. 기타

- **단독주택** | 통상 한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것
 - 소유주가 1명(공동명의 포함)인 다가구주택도 포함
 - 다가구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가 불가능

- 아 파 트 │ 5층이상 공동주택이 해당
 - 4층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받았으면 아파트로 처리

연립 주택

○ 4층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아 가구별로 매매가 가능한 주택 (2~4층의 빌라, 맨션 등)

다 세 대 주 택

- 4층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며 660㎡ 이하는 다세대주택으로 처리 (가구별로 매매가 가능)

비거주응 건

- 비거주용 건물 내 사람이 살 되 그 거주 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경우
- 상가, 학원 등 영업을 목적으로 지은 집이지만 살림하는 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으로 처리

오피스텔

ㅇ 오피스텔 거처가 해당

기타

○ 판잣집, 비닐하우스나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이나 위에서 예시되지 않은 주택이외의 거처가 해당

마. 자동차 보유

♡. 자동차 보유					
경 L	발 유: 유: P G: 기차등:	대 대 대 대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량소유와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차량을 유지 보수 및 운영(소유와는 다른 개념)하는 경우
- 가구용으로 사용하는 것만 기입
 - 가구용 및 영업용으로 사용하나 주로 영업용일 경우 제외
 - 지프나 승합차 등도 가구용일 경우 포함
 - 개인택시, 트럭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경우 제외
- 평상시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차를 출퇴근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자동차 보유는 없음으로 처리

바. 주거에 관한 사항

Ⅵ. 주거에 관한 사항										
구 분	점 유 형 태			(단위 : 천원)				• 사용면적	주택	
	1. 자기집	2. 무상 주택	3. 사 택	4. 전 세	5. 영구 임대	6. 보증부 월세	7. 보증금 없는 월세	(전용)	소유 소유	* 자기집의 경우
보증금								m²	1. 있음	주택기격 (천원)
월세 (사글세)									2. 없음	점유율 (전체의 %)
월세 평기액*										

기입방법

- 점유형태 중 해당되는 곳에『보증금』,『월세』,『월세평가액』금액을 조사하여 기입
- ㅇ 사선으로 되어있는 항목은 조사하지 않음
- 보증금에는 임차가구에서 임대가구에 제공한 전세금 및 보증금을 기입
- 월세는 임차가구에서 주거를 위해 임대가구에게 실제로 지급한 비용을 기입

- **월세평가액** ※ 조사담당자가 직접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 **월세평가액**은 조사대상가구의 주거와 생활여건 및 노후 정도와 유사한 주택을 월세로 빌린다고 할 때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을 기입
 - ㅇ 조사대상가구에 문의하거나 가구에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인근 공 인중개사무소에 문의하여 기입

자 기 집

- 임차한 주거가 아닌 주택에서 거주하는 형태로, 소유권이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에게 있는 경우에도 해당
- 타 가구가 제공하는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① 유지비용을 부담하거나
 ② 주택관련 세금을 납부하거나 ③ 담보대출이자 등을 부담하는
 경우 『자기집』에 분류
- 주택가격 : 주택가격은 매매를 가정할 때의 금액(시세가격)으로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조사대상가구에 문의하여 기재
- 점유율 : 다른 가구에게 임대해준 부분이나 영업부분을 제외한 면적을 비율로 기재. 전세나 월세 등 임대 부분이 없을 시 점유율 100%로 기입

무상주택

○ 임차한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가구에게 주택임차료를 전혀 지불 하지 않고 살고 있는 형태

사 택

가구주나 가구원이 근무하는 회사나 관공서 소유의 사택을 소속직원에게 임대한 형태

전 세

○ 임차인이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제공하고 거주하다가 임대계약이 만료된 때 나오면서 전세금을 되돌려 받는 형태

영구임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공급하는 주거형태로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의 경우에 해당 (공공임대는 제외)

보 중 부

○ (보증부) 보증부 월세, 보증부 사글세가 포함됨

월 세

항목 기입 시 보증금과 월세는 구분하여 해당란에 기입하고, 사글세는
 사글세 총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금액을 해당 월의 월세로
 기입

보증금 없는 월세

○ 보증금 없는 월세에는 순수 월세, 사글세가 포함됨

사용면적

-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의 면적을 기입하는 것임
 - 주거용과 영업용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영업용 부분 제외
 - ㅇ 주택의 종류에 따라
 -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에서 건물 면적만 조사(토지, 창고 제외)
 - 아파트, 다세대 주택은 분양면적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 기입
 - ㅇ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라
 - 조사대상가구가 주인가구일 경우에는 주택 전체의 연면적에서 임대한 부분을 제외
 - 조사대상가구가 전세나 월세 등으로 세 들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한 면적만 기입
 - 가구에서 평으로 응답하는 경우 제곱미터(m²)로 환산하여 기입

주택소유 여 부

- 현재 **자기집에 살고 있는 경우**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더라도 타 지역에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 있음』에 해당
- 현재 중도금만 불입되어 있는 경우도 『1. 있음』에 해당
 - 주택소유여부에 『1. 있음』으로 표시했어도 이를 타 가구에 임대하고 본인은 전세나 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할 경우 위의 『점유형태』에서 전세나 월세로 기입한다.
 - 점유형태가 자기집인 경우에는 반드시 『1. 있음』으로 표시

주 택 점유율

ㅇ 자가가 주거용으로 점유하는 비율

예를 들어, 조사대상가구가 3층 짜리 시가 9천만원 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이 건물이 1층은 상가, 2층은 세든 가구, 3층은 주인 가구가 사는 경우 점유율은 50%[3층/(2층+3층), 영업용 면적 제외]로 기입

03 가계부 수지 작성 방법

03-1 자동이체항목

Q

- **기입하는** 조사대상가구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매월 소득 및 지출항목이 자동으로 입출금되는 경우
 - 월급명세서 등에 명시된 급여, 원천징수 세금, 각종 기여금 등
 - 공동주택관리비의 각종 지출내역(일반관리비, 청소비, 화재보험료 등)
 - 통신비, 육아 및 교육비, 카드결제대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저축, 따로 살고있는 배우자나 자녀의 등록금 등

- 기입방법 가계부 배부시 조사대상가구의 계좌로 자동입출되는 항목을 파악
 - 어떤 가구원의 것인지를 확인하여 가구원별로 구분하여 기입
 - ㅇ 자동이체항목에 미리 열거한 항목이외의 수입이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공란에 기입

03-2 수입과 지출란

가. 가계부 작성방법

가계부 작성방법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u>현금 또는 현물로 받은 수입</u>과 현금과 신용카드 등으로 <u>지출한 내역</u>, 외부에서 현물(상품 및 서비스)로 받아 귀댁에서 소비한 내역을 매일 매일 기입
- ㅇ 같이 살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실제 수입과 지출을 원단위로 기입
- 지출품목이 많아 한 페이지를 넘을 때는 가계부 뒤편의 여분지를 사용하고, 수입이나 지출이 전혀 없는 날에는 "없음"이라고 기입
- 가구주가 밖에 나가서 쓴 돈이나 가구원에게 준 용돈이 있으면,
 어디에 썼는가를 품목별로 파악하여 기입
- 다음과 같은 지출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세분하여 구체적인 품목명을 기입
 - 예 : 선물, 교통비, 잡비 등 → 선물용 설탕, 시내버스비, PC방 요금 등
- 영업상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품목이나 가내 부업을 하기 위하여 지출한 원재료비, 비품비 등은 기입하지 마시고, 가정생활을 유지 하기 위하여 지출한 내역만 기입
- 영수증이 있는 경우 해당 일자의 "영수증 붙이는 곳"에 붙이시고, 영수증이 없는 지출 내역만 가계부에 기록
- <u>자동이체항목 기재 칸에 이미 한 번 기록하신 내용을 가계부</u> 본 페이지에 다시 쓰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물(상품 및 서비스)로 받아 가구에서 소비한 경우에는 품목명과 <u>지</u> <u>급주체</u>를 상세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금액은 시장가격(소비자가격) 으로 평가하여 기입하고, 수입의 "현물"란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다른 가구의 소비를 위한 선물 또는 다른 가구에서 소비하고 있는
 상품・서비스 요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선물란에 ✔표시
- 가구의 월중 양곡소비량과 매일의 외식·결식·접대 횟수를 기입해 주십시오.

나. 조사항목별 기입방법

○ 해당되는 일자의 페이지에 기입하며, 수입·지출품목이 많아 한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계부 여분을 활용하여 계속 기입

ㅇ 수입 종류 및 지출의 품명과 용도

- 현금이나 현물 수입의 경우 수입의 종류 및 공제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는 품명과 용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입
- ※ 타가구로부터 대가없이 선물로 받은 현물은 수입에서 제외
-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품목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몇 개월분인가를 기입
- 소득, 조세, 통신비에 대해서는 어느 가구원의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입

○ 수입(현금, 현물)

- 가구의 현금수입과 현물수입 금액을 『원』 단위로 모두 기입
- 근로의 대가로 현물을 받거나, 자가생산물이나 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직접 소비한 경우에는 소비자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을 현물수입으로 기입
- 현물 수입의 경우만 체크란에 √ 표시하고 현금수입의 경우는 체크란에 표시하지 않고 금액만 기입

○ 지출(현금, 신용카드 및 외상, 선물)

- 가구에서 구입한 상품 값이나 서비스 금액을 『원』단위로 기입
- 『현금』라은 현금 또는 수표, 체크카드, 상품권으로 지불한 경우
- 『신용카드·외상』 란은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할부, 신용카드, 외상 지출한 경우
- 『선물』 란은 조사대상가구에서 타가구로 이전을 목적으로 상품 및 서비스를 지출한 경우에 표시
- 『신용카드·외상』, 『선물』의 경우만 체크란에 √ 표시하고 현금지출의 경우는 체크란에 표시하지 않고 금액만 기입
-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을 일부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구입한 경 우에는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과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두 줄로 기입



Part 03

- 1. 관련용어 해설
- 2. 조사표 예시
- 3. 통계법(발췌)
- 4. 가계동향조사가 언급된 법령

1 관련용어 해설

○ 가구(家口, household)

1인 또는 2인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및 생계를 함께하는 생활단위

○ 가구주(家口主, reference person)

호적상의 호주나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의 구성원 중 실제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생활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 따라서, 단순히 가구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가장과는 차이가 있음

○ 가구원(家口員, household member)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고 자산 또는 소득의 전부나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가구의 구성원. 가구는 혈연관계인 가족으로 구성되기도 하고, 비혈연 관계의 가구원이 동거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가족이라 해도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음

○ 근로자가구(勤勞者家口, wage and salary earners)

가구주가 정부나 기업에 고용되어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을 받는 가구

○ 소득(所得: income)

가구의 실질적인 자산의 증가를 가져온 일체의 현금 및 현물의 수입을 말하며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

자산거래, 이전 및 보유로 인한 손익은 포함되지 않음

<참고> 소득의 구성



○ 경상소득(經常所得: current income)

가구 및 가구원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으로부터 혼합소득인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 등으로부터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등으로 부터 이전되는 소득 등 경상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employee income)

가구주, 배우자, 기타가구원의 급여 소득, 상여금 등을 포함(조세 및 공과금 등 공제되기 전 총액을 기입)

- 사업소득(income from self-employment)

사업경영을 통해 얻은 판매수입 중에서 가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로 전입된 소득

- 재산소득(property income)

재산의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개인연금소득, 퇴직연금소득, 기타재산소득으로 구성

- 이전소득(current transfers received)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 이전에 의한 소득

• 공적이전소득

사회보험형 연금, 각종 사회보장수혜 등

· 사적이전소득

타가구로부터 대가없이 받은 생활비 보조

ㅇ 비경상소득(非經常所得: irregular income)

경조소득, 퇴직수당 등 일정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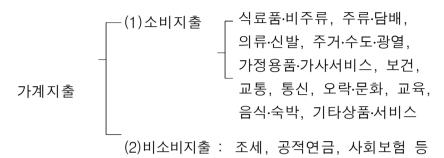
○ 기타수입(other cash inflow)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 없이 자산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현금수입 (예금 인출한 돈, 자산을 매각한 돈, 빌린 돈 등). 따라서 기타수입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가계지출(家計支出: expenditure)

가계지출은 실질적으로 가계의 자산이 감소되는 지출로써, 소비지출과 비소비 지출로 구성

<참고> 가계지출의 구성



○ 소비지출(所費支出: consumption)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구재 및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대가로 지출되는 비용

ㅇ 비소비지출(非所費支出: current transfer paid)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

- 공적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

- 사적비소비지출

가구간 이전,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ㅇ 기타지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 이외에 현금이 유출되는 지출로 적금, 재산구입대금 (유가증권, 토지, 건물 등) 등과 같이 현금이 지출되어 재산의 형태가 변한 것 또는 빌린 돈 갚음과 같이 부채의 감소를 수반하는 지출

ㅇ 사회적 현물이전

정부 및 비영리단체가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로서 예를 들면, 정부가 가계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초등학교 등)과 보건의료 (보건소 진료) 등이 있음. 이는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등과 같이 정부가 가계에 현금으로 지원하여 가계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경상이전지출과는 구별

록

○ 처분가능소득(可處分所得: disposable income)

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의 비소비지출액을 공제하고 남는 소득. 즉, 가구에서 실질적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소비와 저축에 이용할 수 있음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equivalised disposable income)

서로 다른 가구의 후생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가구소득을 1인가구 기준으로 표준화한 후, 저소득층 지원 및 조세징수 등의 효과를 고려한 소득

○ 평균소비성향(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100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얼마 만큼 소비지출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계산

○ 흑자액(黑字額: amount of surplus)

처분가능소득(소득 - 비소비지출) - 소비지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남은 금액은 자산의 구입이나 저축 등에 이용한 금액

○ 흑자율(黑字率 : surplus rate)

흑자액/처분가능소득*100

처분가능소득에서 지출하지 않고 남은 부분으로 평균소비성향과 흑자율을 합하면 100이 됨

2 통계법(발췌) - 2017. 8. 9 일부개정 -

- 가. 조사응답 의무와 조사원의 조사원증 소지 및 제시 의무
- 제26조 (실지조사 등)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이 활용 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장은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자료에 의하여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2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 나. 비밀의 보호 및 통계목적 이외 사용금지
-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 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벌칙

- 제39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 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 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 ② 제27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이전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계동향조사가 언급된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27조의2 (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16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정당시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 (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10호, 2013.8.13., 일부개정]

제2조의2 (연로회원지원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정회는 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과 연로 회원지원금 월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로회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금액만큼 연로회원지원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탁법개정]

- 제19조 (생활지원금)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8.>
 -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69호, 2014.11.2 일부개정]

- 제47조의5 (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보험료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호대상자: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의 가입자. 다만, 해당 연도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12.31., 탁법개정]

- 제12조의2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매년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가목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 2014.7.16., 타법개정]

제7조 (주택개조비용 지원대상자 자격) 1. 주거약자가 속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일 것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 제2조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 (價額)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적혀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가목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254호, 2010.6.30 일부개정]

- 제19조 (주택의 특별공급) ⑥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6.8.18., 2009.9.17., 2010.2.23., 2010.10.8., 2013.5.31., 2013.12.27., 2014.12.26., 2015.2.27.>
 - ①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임신 또는 입양을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2008.7.2., 2008.12.31., 2009.9.28., 2010.2.23., 2013.3.23., 2014.12.26., 2015.2.27.>

- 제20조의2 (공공주택의 입주예약자 선정에 관한 특례) 2.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2.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건설량의 15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이 경우 제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으로 하고, 제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9조제9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 3.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 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에 해당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4. 제11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예약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입주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 이경우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예약자를 선정한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제3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등에 대한 특례) 7의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 (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 제32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 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시·군·

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으로 한다)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개정 2002.9.3., 2004.1.14., 2004.10.22., 2005.3.9., 2005.11.17., 2006.8.18., 2008.6.20., 2008.7.2., 2008.12.31., 2010.2.23., 2010.6.30., 2011.3.15., 2014.12.26., 2015.2.27.>

③ 국민임대주택중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단독세대주를 제외한다)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14., 2005.11.17., 2014.12.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18호, 2014.12.30., 타법개정]

제15조 (취업보호 기준 등) 2. 제17조에 따라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가계 월평균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 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제7조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교육지원) 법 제4조제3호에 따른 그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이하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라 한다)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할 때에는 「통계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사람이면서 국가보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한다.

제38조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한 대부)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중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 이하인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대부를 한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94호, 2015.1.16., 일부개정]

제14조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이하 "실비보호대상자"라 한다)

고등교육법 [법률 제13217호, 2015.3.13., 탁법개정]

제11조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국가보훈 기본법 [법률 제12104호, 2013.8.13., 일부개정]

제19조 (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96호, 2015.2.3., 일부개정]

제12조 (보상금) ④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告示)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全國家口) 가계소비 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668호, 2014.5.21, 일부개정]

제12조 (보상금) ⑥보상금의 지급 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 가구(家口)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42호, 2013.7.16., 일부개정]

제19조 (교육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 중 가계조사 통계의 전국가구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있다. 이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363호, 2014.1.28., 일부개정]

제8조 (보상금) ②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법」 제3조제2호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 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희생과 부상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63호, 2014.5.28., 타법개정]

- 제12조의2 (생활지원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12., 2007.10.23., 2007.10.31., 2011.11.1., 2013.11.20., 2014.5.28.>
 -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12.31., 타법개정]
-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⑤ 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7.4.12., 2008.4.18., 2014.10.22.>
- 제52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하여 온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45조제1호 본문에 따른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5조제2호에 불구하고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이하이 조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이라 한다)은 별도로 보상한다. 다만,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4.18.>

제54조 (주거이전비의 보상)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이하 이 항에서 "월평균 가계지출비"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5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1.13., 2012.1.2.> 1인당 평균비용 = (5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타법개정]

제40조 (휴업 보상금의 지급 기준)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휴업 보상금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090호, 2015.2.10., 일부개정]

제22조 (휴업 보상금의 지급) 법 제8조의2에 따른 휴업 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해마다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日割)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